



미국의 장애학생 대상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제 고찰*

옥민욱** · 홍정숙*** · 표윤희****

A Study on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K-12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the United States

Ok, Min Wook** · Hong, Jeongsuk*** · Pyo, Yunhui****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aws and policie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school-ag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educational settings in the United States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similar legislation in South Korea. **[Method]** To achieve this, a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using law and policy documents and papers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irst,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and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are reviewed as the major American laws relating to the provision of reasonable accommodations for school-aged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key contents of main principles are presented, including character and purpose, scope of protection, the obligation to provide education,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Second, categories and specific examples are established by dividing the content scope of these provisions into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Third, the procedure of selecting, providing, and evaluating accommodations when developing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s and 504 plans are provided.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to improve similar policies in South Korea are made alongsid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Reasonable accommodations, Law, Policy, United States, Students with disabilities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2339)

** 제 1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조교수
Assistant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공동저자,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교신저자, 위덕대학교 특수교육학부 부교수(yhpyo@uu.ac.kr)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pecial Education, Uiduk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은 기본적 인권이자 인간 삶 전반에 걸쳐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31조 제1항)는 원칙이 천명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장애학생들은 오랜 기간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였고(홍정숙, 안상권, 2018), 최근까지도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강영택, 이정현, 이성용, 2016). 우리 사회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없애는데 2007년 제정되어 2008년에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2008년에 비준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또한 그러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은 사회적 소수자 중 특히 ‘장애 부문’에 특화된 차별금지이며(김명수, 2012), ‘교육’을 중요한 차별금지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차별금지의 내용으로 ‘직접차별, 합리적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s) 제공, 적극적 우대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제5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한 차별,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사용 방해’를 차별행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제4조). 이 중 장애인권리협약에 규정된 합리적 편의 제공은 차별의 영역에 규정됨으로써 즉각적인 시정이 요구되는 당사국의 의무로서 기능한다. 나아가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는 성, 인종 등과 관련된 차별금지법과 달리 2000년대 들어 국제적으로 확산된 장애차별금지법에만 주로 나타나는 의무이며, 이들 법의 핵심 요소로 거론되곤 한다(오욱찬, 2016; Lawson, 2008).*

장애인권리협약은 ‘합리적 편의’를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는 필수적이고 적절한 변형 및 조정’(제2조)으로 정의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

*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합리적 편의 제공을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독특한 표현방식으로 ‘정당한’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의 권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오욱찬, 2016; 최승철, 2010). 이 연구에서는 reasonable accommodations을 합리적 편의로 제시하며,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서는 ‘정당한 편의’라는 용어로 기술하고자 한다.

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제4조)고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과도한 부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장애인권리협약에서 교육 관련 합리적 편의는 교육 조항(제24조) 제2항에서 장애인의 교육권 실현을 위한 보장 사항 중 하나로 ‘개인의 요구에 의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이 규정되었고, 제5항에서는 장애인이 고등교육, 직업훈련, 성인교육 및 평생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 보장을 명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교육 부문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로는 1)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이 규정되었다(제14조 제1항).

한편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교육 분야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는 1973년 재활법(the Rehabilitation Act)의 504조에서 비롯되었다. 재활법은 연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분야에서의 장애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였으며,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이하 ADA) 제정으로 민간 영역까지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가 확대되었다. 이후 제정된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장애차별금지법에도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가 규정되었으며, 2006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가 포함되면서 ‘합리적 편의’는 장애차별금지법의 핵심적인 요소로 정착되었다(오욱찬, 2016; Kanter, 2019). 이처럼 미국에서는 1973년에 재활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재활법 504조, ADA,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 이하 IDEA)*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교육 분야에서도 선진적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이루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정당한 편의 제공에 대한 정의와 교육 분야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 등이 담겼으나, 그 영역이 제한적이고 정당한 편의 제공의 구체적 절차 등이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김기룡, 김삼섭, 2014; 홍정숙, 김선옥, 2022).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이 선언적인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지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를 최초로 법제화하고, 장애학생에게 합리적 편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온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 관

* 2004년에 장애인교육향상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IA)으로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IDEA로 많이 불리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IDEA로 사용하고자 한다.

런 상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미국 교육 분야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장애학생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의 내용적 범위 및 어떠한 절차로 장애학생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른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장애학생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률과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 결과가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정당한 편의 제공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장애학생을 위한 내용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미국 합리적 편의 제공의 내용적 범위는 어떠한가?

셋째, 미국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의 절차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률 및 정책문서, 학술자료 등의 검토를 통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된 핵심 자료는 미국 정부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법률로 Google 검색을 통해 재활법(<https://tinyurl.com/3fh8dh94>), ADA(<https://www.ada.gov/>), IDEA(<https://sites.ed.gov/idea/>)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외 온라인 학술검색 사이트 검색 과정을 통해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학술논문 및 정책보고서를 추가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국내 자료의 경우, 누리미디어 DBpia,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회도서관 등의 온라인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합리적 편의’, ‘정당한 편의’, ‘미국 장애인법’, ‘미국 재활법’, ‘미국 장애인교육법’ 등을 키워드로 입력하여 검색하였다. 국외 자료의 경우, ERIC, PsyINFO, Academic Search Complete, Google Scholar 등의 온라인 학술검색 사이트에서 ‘reasonable accommodations’, ‘ADA’, ‘Rehabilitation Act’, ‘Section 504’, ‘IDEA’ 등을 키워드로 사용해 검색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검색된 국내 자료는 1993년부터 2022년에 걸쳐 출판된 것으로 총 278편이었으며, 국외 자료는 1966년부터 2021년에 걸쳐 출판된 것으로 총 451편이었다. 수집된 자료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한 후, 본 연구 주제와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중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해 사용된 주요 자료는 국내 자료 총 9편(학술논문 9편; 예: 백종인, 2007; 이병인, 2007; 송강직, 2010; 조용만, 2009; 홍석한, 2021), 국외 자료 총 15편(학술논문 10편, 정책보고서 5편; 예: Billings, Pearson, Gill, & Rich, 1994; deBettencourt, 2002; Henderson, 2001; Motwani, 2007)으로 재활법 504조, ADA, IDEA 중 하나 이상의 법률의 내용을 분석 혹은 비교해 제시한 자료였다. 특히 세 가지 법률을 모두 비교 및 분석한 자료들(예: 백종인, 2007; Henderson, 2001)의 분석 틀을 참고하여 재활법 504조, ADA, IDEA 각 법률의 주요 내용을 ‘성격 및 목적’, ‘보호대상 범위’ 및 ‘장애학생 교육 및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주요 원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번째 및 세 번째 연구 문제인 ‘미국 합리적 편의 제공의 내용적 범위와 의무 절차’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및 주 교육부(State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 교사와 학부모를 위해 발간한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지침서들을 핵심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Google에서 키워드로 ‘accommodations guide’를 검색하여 수집하였다. 총 40편 정도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내용을 검토하여 유사한 내용의 자료들은 제하고 같은 주 교육부에서 발간한 자료의 경우 최신 자료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분석 자료는 총 11편(예: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Oklahom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11)이었다. 추가로 첫 번째 연구 문제를 위해 활용된 자료 중 관련된 내용이 있는 논문 및 정책보고서들(예: Brougher, 2010; deBettencourt, 2002)과 관련 법률들(재활법 504조, IDEA)의 내용도 분석 시 필요한 경우 참고하였다. 또한 Google 검색 과정에서 도출된 웹사이트(IRIS Center: <https://tinyurl.com/5dcj9ftn>)의 관련 내용(조정과 수정)도 참고하였는데 이는 교사들에게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웹사이트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 교육 분야의 장애학생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와 관련 있는 주요 법률인 재활법 504조, ADA, IDEA의 주요 내용과 그 내용적 범위는 어떠한지 밝히고 미국 교육 현장에서 합리적 편의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장애학생들에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1) 재활법 504조

(1) 성격 및 목적

장애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개념의 시초는 교육법이 아닌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 of 1964)과 연관되어있다. 1964년 7월 2일에 제정된 시민권법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종교, 성별 등의 이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미국 시민권 법제화의 중요한 법 중 하나이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의 불평등한 투표권과 직장, 학교 및 공공시설에서의 인종 분리가 종식되었다. 비록 시민권법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법 제정의 발판이 되었다(Fleischer & Zames, 2001; Vaughn, 2003). 시민법 제정 이후, 1970년대 장애 권리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민권 용어가 포함된 재활법이 1973년 통과되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의 시민권이 법으로 보호받게 되었다(ADL, 2018). 재활법 504조는 직업환경 및 교육환경에서 장애인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과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주류 사회로의 통합에 긍정적인 목적을 두었다(김영환, 1993). 구체적으로 재활법 504조는 “미국의 어떠한 장애인도 장애만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federal financial assistance)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의 참여 제외, 수혜 거부 및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29 U.S.C. § 794(a))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본 조항은 연방정부로부터 직·간접적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나 기관은 장애인이 주류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는 가능한 최대 범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Henderson, 2001).

(2) 보호 대상 범위

재활법 504조의 보호 대상은 “(1)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impairment)를 가진 사람, (2) 그러한 장애의 기록을 가진 사람, (3) 그러한 장애를 가졌다고 간주되는 사람” (42 U.S.C. § 12102(1))이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주요 생활 활동(major life activities)’이란 “자신 돌보기,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호흡하기,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일하기 등” (42 U.S.C. § 12102(2)(A))을 포함하지만, 조항에 제시된 예에만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상당한 제약’ 역시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러한 활동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의 구체적인 목록은 제시되지 않아 재활

법 504조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광범위한 범위를 아우른다(Billings et al., 1994). 이러한 포괄적인 장애 정의는 장애의 수준과 상관없이 장애로 인해 불리함을 조금이라도 가지는 장애인에 대해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차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Shimizu, 2011).

동법의 적용 대상은 직장인, 구직자와 같은 성인도 포함되지만, 이를 교육 분야로 좁혀서 살펴보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예: 공립 및 사립학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여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위의 보호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유·초·중·고등학생(K-12) 및 대학생이라고 볼 수 있다. 재활법 504조의 적용 대상 범위는 후술하는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법인 IDEA보다 포괄적으로, 모든 IDEA의 적용 대상은 자동으로 재활법 504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반대로 모든 재활법 504조 적용 대상 학생이 IDEA의 적용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감염병(예: AIDS), 알레르기나 천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사고로 인한 일시적인 장애 등은 재활법 504조의 적용 대상이지만 IDEA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11). 즉, 재활법 504조는 IDEA를 통해 보호받지 못하지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학생들의 지원을 의무화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3) 장애학생 교육 및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주요 원칙

재활법 504조의 시행규칙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학교는 해당 학군에 거주하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이나 정도와 상관없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FAPE)’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적절한 공교육’은 학생의 요구에 맞게 개별화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기회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지원 및 서비스(related aids and services)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학부모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으며 만약 비용이 들더라도 비장애학생의 교육에 부과하는 것 이상의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무상원칙은 소풍 등과 같은 특별활동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 여름학교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즉 재활법 504조는 모든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서의 장애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재활법 504조의 적용 대상인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필요한 관련 지원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대개 이러한 지원과 서비스 제공하에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지만 관련 지원과 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장애학생이 일반학급 외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그 교육환경은 시설조건, 서비스, 교통 등의 측면에서 비장애학생의 교육환경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백종인, 2007; Billings et al., 1994).

재활법 504조에서 ‘합리적 편의’는 시행규칙인 Subpart B 고용(Employment)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고용인은 프로그램이나 활동 운용에 있어 과도한 어려움(undue hardship: 합리적 편의 제공의 비용이 사업의 운영에 과도한 행정적 어려움이거나 비용을 초래하는 경우)을 주지 않는 한 피고용인 장애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한에 대한 합리적 편의(예: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조정, 작업 일정 및 시간 조정, 필요한 도구 제공)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합리적 편의라는 용어는 Subpart D 유·초·중등 교육(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에는 언급되지 않으며 Subpart E 중등 이후 교육(Postsecondary Education) 부분에 ‘조정(adjustments)’과 ‘수정(modifications)’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34 C.F.R. § 104.44).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학업 관련 필수 요구사항들을 수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예로 학위 이수에 허용되는 기간 변경, 학위 이수에 필요한 과목 대체, 특정 과목의 운영 방법 조정, 녹음기의 사용이나 안내견의 교실 동반, 성적 평가 방법의 변경,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텍스트 및 통역사 제공,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독서대(readers) 설치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조정’과 ‘수정’에는 ‘합리적’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있지 않지만 사실상 이를 총괄하는 개념의 용어가 ‘합리적 편의’라고 볼 수 있다(Shimizu, 2011).

이처럼 재활법 504조에서 합리적 편의로서의 조정이나 수정은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관(예: 대학)에서 요구되며 유·초·중등 수준의 교육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의무조항은 찾을 수 없다. 학령기 장애학생 중 IDEA 적용 대상 학생들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통해 합리적 편의로서의 조정과 수정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학교는 재활법 504조 적용 대상 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일까? 비록 재활법 504조에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미국 연방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와 주 교육부들(예: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은 IDEA 적용 대상이 아닌 재활법 504조 적용 대상 학령기 장애학생들에게도 필요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교육 현장에서는 504 계획(504 plan) 작성을 통해 이러한 학생들에게 수업에의 접근 및 주(state) 및 학군(district) 차원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Bureau of Exceptional Education and Student Service, 2011). 이는 중등교육 이후의 교육기관에서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면 의무교육인 유·초·중등 교육기관에서의 제공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himizu, 2011). 재활법 504조는 교육청과 학교 당국이 재활법 504조 관련 업무 담당자를 선정해야 하며 장애학생에 대한 진단·평가, 504 계획 작성, 배치, 재평가 등의 교육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백종인, 2007).

2) ADA

(1) 성격 및 목적

ADA는 고용, 공공서비스, 통신, 교통수단의 활용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990년 제정되었다. 동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명확하고 포괄적인 국가 차원의 규정을 세우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명확하고 강력하며 일관된 강제적 기준을 제공하며, 연방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동법에서 확립한 기준 수행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42 U.S.C. § 12101(b)). 1973년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최초의 시민권법인 재활법 504조가 제정되었지만, 적용 대상이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시설로 국한되어 많은 장애인은 주정부, 지방정부, 사기업 등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 및 시설에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였다(백종인, 200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ADA를 제정하여 재활법 504조의 적용 범위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과 관계없이 모든 기관과 시설(예: 연방·주·지방 정부, 사기업 및 시설)로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한 기회를 주어 이들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였다(홍석한, 2021; Motwani, 2007). 구체적으로 ADA의 제1장(Title I)에서는 고용(employment), 제2장(Title II)에서는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 제3장(Title III)에서는 사설 운영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제4장(Title IV)에서는 통신(telecommunication)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유동철, 이미라, 박가은, 2011). 이처럼 ADA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익에 대한 보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종합적인 법제로 세계 각국의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입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여러 장애인 관련 법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송장직, 2010; 이소영, 2006).

(2) 보호 대상 범위

ADA 보호 대상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 재활법 504조와 동일하다(Wilkinson & Dresden, 1997). 즉 ADA의 적용 대상은 재활법 504조와 같이 현재 개인의 주요 생활 활동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제약을 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장애의 기록이 있거나 혹은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42 U.S.C. § 12102). 다만 감염병(예: 결핵) 환자의 경우 동법의 기준에 의한 보호 대상 범위의 장애인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이 되는 경우 공공 서비스나 시설사용 등으로부터 배제되거나 취업이 거부될 수 있다. 직접적인 위협이란 ‘정책이나 절차의 수정, 보조도구 및 서비스 등 합리적 편의 제공에도 제거될 수 없는 타인의 건강 혹은 안

전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significant risks)’을 의미한다(42 U.S.C. § 12111(3)). 또한 ADA는 장애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불법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42 U.S.C. § 12210(a)), 성도착자(42 U.S.C. § 12208), 동성애자, 양성애자(42 U.S.C. § 12211(a)), 성전환증, 노출증, 강박적 도박(42 U.S.C. § 12211(b))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ADA의 보호 대상을 교육 분야로 좁혀 살펴보면 연방정부의 재정 보조 여부와 상관없이 공립 및 사립 유·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및 기타 모든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를 지닌 학생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ADA 제2장(Title II)은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제3장(Title III)은 민간이 운영하는 사립학교 및 교육기관에서의 모든 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장애학생의 참여 배제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유동철 외, 2011). 단 사설 클럽이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은 동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42 U.S.C. § 12187). 즉 ADA는 미국의 거의 모든 교육기관, 활동,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영향을 미치며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교육적 성취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장애학생 교육 및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주요 원칙

ADA는 재활법 504조나 IDEA와 달리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을 받을 권리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사실상 학령기 장애학생의 경우 재활법 504조와 IDEA에 의해 우선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장애학생이 재활법 504조와 IDEA에 의해 보호받으며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이상의 추가적인 권리가 ADA에 따라 보장되지는 않는다(백종인, 2007). ADA는 학령기 장애학생의 평가나 배치, 절차상 보호장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재활법 504조와 함께 더이상 적절한 무상의 공교육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고등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예: 대학교, 대학원)의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Henderson, 2001). ADA와 재활법 504조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합리적 편의(예: 시험 수정, 도구 제공 및 수정, 시설 접근성 강화)를 제공해야 하며 이들을 담당하는 ADA 코디네이터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ADA가 학령기 장애학생 교육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다. ADA는 재활법 504조가 적용되지 않는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사립학교 및 기타 사설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에서의 장애학생의 권리를 보호하며 직업교육 프로그램(예: 지역사회 기반 직업훈련 및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애학생의 경우 합리적 편의가 필요한 경우 ADA의 제1장(Title I) 고용 부분의 조항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즉 ADA는 재활법 504조의 규정과 함께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ADA의 적용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활동뿐 아니라 그 외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활동 (예: 밴드, 클럽, 과외활동, 운동) 등에서의 참여제외, 수혜거부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학생에게 동등한 기회 제공을 보장한다(Frey, 2018).

재활법 504조와 유사하게 ADA에서 ‘합리적 편의’는 제1장(Title I) 고용 부문에 언급되고 있으며 동법의 보호 대상인 장애인 구직자나 근로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과 관련하여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보고 있다 (조용만, 2009). 즉 합리적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고용에서 평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로 인한 여러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ADA는 ‘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강화, 직업 일정 조정, 설비나 장비 획득 및 개조, 시험, 교육자료나 정책 등의 적절한 조정, 낭독자나 통역사 제공’ 등을 예로 들고 있다(42 U.S.C. § 12111(9)). 단 이러한 합리적 편의 제공의 비용이 사업의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불이행이 정당화될 수 있다(42 U.S.C. § 12111(10)).

비록 ‘합리적 편의’는 ADA의 제1장(Title I) 고용 부문에만 명시되어 있지만 ADA가 적용되는 모든 영역의 해당 기관은 장애인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차별금지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Smith, 2001). 즉 ADA의 목표 중 하나는 장애학생의 교육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ADA가 적용되는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은 보호 대상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ADA는 재활법 504조와 IDEA와 달리 진단평가, 교육적 배치, 절차적 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제공하지 않는다.

3) IDEA

(1) 성격 및 목적

IDEA는 시민권법인 재활법 504조와 ADA와 달리 교육법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을 주 및 지역의 교육기관에 제공하여 보호 대상 장애학생에게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illings et al., 1994). 즉 모든 장애학생에 대하여 그들의 고유한 필요에 맞는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FAPE)’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행을 위한 일련의 절차와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다(Howard, 2004). IDEA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75년에는 그동안 장애를 이유로 의무교육이자 권리인 공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모든 장애아동에게 장애의 종류와 정도의 차별 없이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EHA)인 공법 94-142가 통과되었다. 이 법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 개별화 교육, 최소 제한적 환경, 비차별적 평가, 절차상 보호 및 부모 참여 등의 주요 원칙을 포함하였는데 이러한 원칙들은 전 세계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었다(Lipkin, & Okamoto, 2015; Turnbull, Turnbull, Stowe, & Wilcox, 2000).

1975년 첫 번째 법 제정 이후 약 4-5년마다 재승인되었으며 1990년에는 EHA가 장애인교육법(IDEA)인 공법 101-476으로 개정되었는데 특수교육 예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켰고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보조공학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였다(육주혜, 전정일, 2004). 또한 자폐성 장애 및 외상성 뇌손상이 장애유형에 새로 포함되었으며 장애학생이 16세가 되는 해에 전환교육 서비스를 IEP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직업교육을 강화시켰다. 가장 최근인 2004년에는 장애인교육향상법(IDEIA)인 공법 108-446으로 개정되었으며 1965년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 2001)의 목표와의 연계, 조기중재 서비스 지원, IEP 개발지원, 연구에 기반한 교수방법 개발, 장애학생 부모의 참여 및 선택권 확대 등을 포함하며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보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다(이병인, 2007; Yell, Shriner, & Katsiyannis, 2006).

(2) 보호 대상 범위

재활법 504조나 ADA와 달리 IDEA는 보호 대상에 속하는 장애범주나 연령을 명확히 하여 보호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IDEA의 보호 대상은 동법이 지정한 13개의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문적 팀(multidisciplinary team)에 의해 이루어지는 개별적 평가를 통해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정된 3~21세의 아동 및 청소년이다. 비장애학생은 대개 18세에 졸업업을 하지만 장애학생들에게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22세까지 무상 공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IDEA가 지정한 13가지 장애유형은 자폐성장애, 농, 청각장애, 농-맹, 정서장애, 지적장애, 중복장애, 정형외과적 손상, 기타 건강장애, 특정학습장애, 말 또는 언어장애, 외상성 뇌손상, 시각장애(맹 포함)로(20 U.S.C. § 1401(3)(A)) 이러한 장애가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저해하는 경우 동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deBettencourt, 2002). 이 외 3~9세의 경우 특정 장애유형으로 진단되지 않아도 발달지체(developmental delays)로 분류되면 특수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출생 후 2세까지의 영유아는 개별가족서비스계획(Individualized Family Service Plan: IFSP)에 따라 제공되는 조기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장애학생 교육 및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주요 원칙

재활법 504조처럼 IDEA는 보호 대상 장애학생이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제공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이란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IDEA는 특수교육을 장애아동의 고유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모에게 비용부담을 주지 않는 무상교육(20 U.S.C. § 1401(29))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혜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로 발달, 교정 및 기타 보조적 서비스(예: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통역 서비스, 재활 상담 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교통수단) 등을 포함하며 무상으로 제공

되어야 한다(20 U.S.C. § 1401(26)).

IDEA는 각 장애학생을 위한 개별화교육계획(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IEP)을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현 교육적 및 기능적 수준 및 필요, 교육 목표, 목표 달성 평가 방법 및 기준, 교육배치,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백종인, 2007). 또한 동법은 IEP 개발과 관련된 상세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보호자에게 진단·평가, 교육배치 등 정보에 대한 서면 통지, 부모의 동의에 의한 다학문적 팀에 의한 종합적인 개별 평가 실시, IEP 팀 구성(예: 보호자, 특수 교사, 일반교사, 학교행정가, 평가 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자, 기타 서비스 제공자), IEP 구성 내용, 매년 IEP의 목표 달성 여부 검토 및 필요시 수정, 3년마다 재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임안수, 2002; deBettencourt, 2002).

재활법 504조와 유사하게 IDEA도 ‘합리적 편의’라는 용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학생이 모든 주 및 학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학년 수준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정(accommodations)’을 제공해야 하며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서는 ‘수정(modification)’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평가(alternative assessment)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20 U.S.C. § 1412(16)). 즉 장애학생의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교육에의 참여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교는 교육적 활동과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조정과 수정을 통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IEP팀은 각 학생의 필요에 맞는 적절한 편의를 선정하고 얼마나 자주, 언제, 어떻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결정하여 IEP에 기술하여야 한다(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IDEA 보호 대상 장애학생에게는 IEP가 재활법 504조 보호 대상 장애학생에게는 504 계획이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처방전’과 같은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 있다(Shimizu, 2011).

2.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의 내용적 범위

장애학생에게 일반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교육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IDEA와 재활법 504조는 이러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평가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각 장애학생이 이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 편의(조정과 수정)를 선정하고 IEP와 504 계획 작성을 통해 문서화하도록 하였다(Sulzberger, 2008; FAPE, 2001). 많은 장애학생은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 및 평가 참여에 여러 장벽(barriers)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벽은 (1) 정보가 제공되는 방법(예: 텍스트, 강의), (2) 학생이 응답하는 방법(예: 쓰기, 말하기), (3) 환경의 특성(예: 소음, 빛), (4) 교수 일정 및 시간(예: 수업 시간, 과제 길이) 등과 주로 관련되어 있다(IRIS Center, n.d.).

교사는 ‘조정’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장벽을 낮출 수 있는데 조정이란 학생의 장애로 인한 제한을 보완하거나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전략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조정은 ‘학습 기대 수준(learning expectation)’을 낮추지 않으며 수업의 내용이나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술 수준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Burton et al., 2011;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조정은 교수(instruction)와 평가(assessment)를 위한 조정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교수적 조정(instructional accommodations)은 수업 시간에 정보 전달 방법이나 사용하는 자료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며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배우는 방법에 변화를 주지만 배우는 내용(예: 동학년 수준의 내용, 범위 및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 둘째, 평가를 위한 조정은 평가의 형식(format)이나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학생이 시험을 보는 방식(예: 시험시간 연장, 시험 보는 장소 변경, 시험문제 낭독이나 응답 대필 허용)을 바꾸지만, 시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IRIS Center, n.d.). 이러한 조정의 제공은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수를 위한 조정과 평가를 위한 조정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intertwined) 사용된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조정은 대개 평가 시에도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교수를 위한 조정이 평가를 위한 조정보다 더 큰 범주라고 볼 수 있다(Oklahom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그러나 학생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선정할 때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의 IEP나 504 계획에 여러 가지 조정이 나열되어 있더라도 모든 수업과 평가 상황에서 학생이 그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의 필요와 주어진 학습과제의 목표에 따라 각각의 조정이 언제 필요한지 명확하게 결정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철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IEP에 따라 ‘철자 검토기(spelling-checker)’를 수업 시간에 쓰기를 위한 조정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철자의 정확도 측정이 평가 목표 중 하나인 쓰기 평가에서는 철자 검토기의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다. 하지만 쓰기가 요구되지만, 철자가 측정 목표가 아닌 수학, 사회, 과학 등 다른 과목의 시험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Burnton et al., 2011).

조정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음과 같이 환경(setting), 타이밍과 일정(timing and scheduling), 응답(response), 정보 전달(presentation)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Oklahoma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첫째, 환경과 관련된 조정은 학생이 수업을 받거나 시험을 보는 장소의 위치나 조건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수업과 평가를 위한 장소는 적절한 빛, 온도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소음이나 방해가 없어야 한다. 의자나 책상 역시 편안하고 학생이 사용하기 적절한 높이나 위치여야 한다. 환경 관련 조정은 대그룹 환경에서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이나 조정(예: 리더기, 대필, 잦은 휴식 필요)이 다른 학생에게 방해가 될 수 있는 경우, 지체장애 학생처럼 물리

적 접근성이 중요하거나 특별한 기구나 환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적절하다. 환경 관련 조정의 예로는 독립적인 공간이나 소그룹 환경에서 시험 보기, 선호하는 자리에 앉기, 특별하거나 개조된 가구 제공하기, 공간의 빛 세기 조절하기 등을 포함한다.

둘째, 타이밍과 일정 관련 조정은 과제, 평가, 활동 등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읽기, 쓰기 등이 요구되는 과제 완수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다른 조정이나 기구(예: 보조공학기기) 등을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적절할 수 있다. 또한 하루 중 집중이 더 어려운 시간이 있거나 과제 완수 중 쉬는 시간이 자주 필요할 수 있는 건강장애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타이밍과 일정 관련 조정의 예로는 유연한 수업 일정, 시험 여러 번에 나누어 보기, 수업이나 시험 중 휴식 시간 제공하기 등을 포함한다.

셋째, 응답 관련 조정은 학생이 수업 활동, 과제, 시험 등을 다른 방법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체, 학습, 감각장애 등을 가진 학생들에게 필요할 수 있다. 응답 관련 조정의 예로는 답지가 아닌 시험지에 작성하고 추후 시험 관리자가 응답 답지에 옮겨 적기, 학생의 응답을 대필해주기(쓰기 평가 시 제외), 보조공학 도구(예: 워드프로세서, 키보드, 점자정보단말기, 음성인식 프로그램) 사용하여 답하기(쓰기 평가 시 철자 검토, 단어사전 등의 기능은 끄고 사용)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관련 조정은 수업 활동이나 평가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문자, 음성, 촉각, 시각, 혹은 혼합된 방법 등을 통해 대안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정은 지체, 감각,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텍스트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게 적절할 수 있다. 그 예로는 대안적 형태(예: 큰 글자, 점자), 보조공학 도구 사용(예: 확대기, 오디오 증폭기, 점자정보단말기, 음성합성 프로그램), 수화 통역사, 낭독자 제공, 시각적 단서 제공 등을 포함한다. 각 범주의 구체적인 조정의 예는 Table 1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Table 1> Common Accommodation Examples in K-12 Schools

Categories	Accommodations
1. Presentation	• Listen to audio recordings instead of reading text • Learn content from audio books, movies, videos, and digital media instead of reading print versions • Work with fewer items per page or line • Work with text in a larger print size • Have a designated reader who reads test questions aloud to students • Hear instructions spoken aloud • Record a lesson, instead of taking notes • Get class notes from another student • See an outline of a lesson

	• Use visual presentations of verbal material, such as word webs • Get a written list of instructions • Use positioning tools (e.g., slant board, book stand) • Use magnification equipment • Use audio amplification devices, sign language interpreter, live captioning, video recording with closed captioning • Use Braille materials or documents, refreshable braille display, Tactile graphic image • Visual cues, highlighted or color-coded materials
2. Response	• Give responses in a form (spoken or written) easier for the student • Braille, sign language responses • Use an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device • Dictate answers to a scribe who writes or types • Capture responses on an audio recorder • Use a spelling dictionary, digital spellchecker, word prediction software • Use a word processor to type notes or give answers in class • Use a pencil/pen grip, handwriting guide, specialized writing paper, slant board, writing checklists • Increased wait time for oral/written expression • Use a calculator, table of math facts, math manipulatives
3. Setting	• Physical access (e.g., ramps, nonslip surfaces, guide rails, automatic doors and elevators, accessible workstation) • Adaptive or special furniture • Specialized lighting • Work or take a test in a different setting, such as a quiet room with few distractions • Preferential seating • Use special lighting or acoustics • Take a test in a small group or independent setting • Use sensory tools such as an exercise band that can be looped around a chair's legs • Class rules and expectations clarified
4. Timing and Scheduling	• Extended time to complete a task or a test • Have extra time to process spoken information and directions • Take frequent breaks • Schedule adjustments (e.g., preferred time of day/day of week) • Predictable routines and procedures • Take a test in several timed sessions or over several days • Take sections of a test in a different order • Visual schedule, checklists of individual responsibilities, planner, electronic device with alarms or cues

* Table contents are adapted from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8),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2011) and Oklahoma Department of Education(2014).

‘수정’은 조정과 다른 개념으로 학생이 학습하는 내용이나 도달해야 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며 ‘조정’이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사용한다(Burton et al., 2011). 교육 커리큘럼, 과제 및 시험 등에 적용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읽기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학생에게 다른 학생들이 읽는 책보다 길이가 짧고 쉬운 어휘로 구성된 책을 대신 읽게 하기, 지체장애로

인해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게 정해진 장수보다 더 적은 장수의 쓰기 과제를 내주는 것, 수학 수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은 곱셈을 배우지만 아직 덧셈 학습이 필요한 지적장애 학생은 덧셈 배우기 등을 들 수 있다(FAPE, 2001; IRIS Center, n.d.). 구체적인 수정의 예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ommon Modification Examples in K-12 Schools

Categories	Modifications
Assignments, Testing, Curriculum	• Learn different-leveled materials (e.g., use of alternative books or materials on the topic being studied) • Complete different homework problems than peers • Answer different test questions • Word bank of choices for answers to test questions • Create alternate projects or assignments or be excused from particular projects or assignments • Provision of calculator and/or number line for math tests • Reworded questions in simpler language • Modified workload or length of assignments & tests • Modified time demands • Get graded or assessed using a different standard than other students (e.g., pass/no pass option, modified grades based on IEP)

* Table contents are adapted from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2018),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2011) and Oklahoma Department of Education(2014).

즉 조정은 수업 및 평가에 있어 장애학생의 ‘접근’을 도와주는 것이며 수정은 그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적절히 선택된 조정과 수정은 모두 장애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정의 사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조정의 적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장애학생에게 수정을 적용하는 것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지만 장애학생은 결국 또래에 비해 더 적게 학습하게 되며 시간이 누적되면 또래가 배우는 중요한 기술 습득에 있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선택된 조정 및 수정은 장애학생의 IEP 혹은 504 계획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만약 조정 및 수정의 변화가 있으면 그 또한 수정하여 기록되어야 한다.

3.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절차

1) IEP 및 504 계획 수립 절차

학령기 장애학생을 보호하는 주요 법률은 IDEA와 재활법 504조로 이를 통해 장애학생은 ‘무상의 적절한 공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IEP팀과 504 위원회는 해당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합리적 편의를 선정해야 하며 이는 IEP 및 504 계획 수립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사(학부모의 동의 필요) 혹은 학부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생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기준에 따라 IDEA 혹은 재활법 504조의 보호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다. IDEA의 경우 평가 계획을 학부모에게 제공하고 15일 이내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진단평가를 위해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60일 이내에 IEP팀은 진단평가를 시행하고 IEP 회의를 통해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IEP로 문서화해야 하며, IEP의 내용은 IEP 회의 직후 가능한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20 U.S.C. § 1414(a)). IEP를 계획하며 IEP팀은 학생에게 필요한 ‘조정’ 과 ‘수정’ 을 파악하게 되는데 특히 ‘의사소통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서비스’, ‘부수적인 도구 및 서비스’, ‘평가에의 참여’ 등의 영역을 통해 이를 고려하게 된다(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IEP팀은 IEP 회의를 적어도 1년에 한번 개최하여 제공되고 있는 특수교육, 편의 및 서비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매3년마다 학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활법 504조의 경우 보호자에게 진단평가 및 배치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IDEA와 달리 학생의 평가 의뢰 시 법적으로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을 의무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 학군에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는 것을 권장한다. 학생의 평가가 요청된 30일 이내에 학교는 해당 학생, 진단평가 및 교육적 배치 등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로 구성된 504 위원회를 결성하고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학생이 재활법 504조의 보호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다양한 자료(예: 성적표, 교사 보고, 학부모 의견, 건강기록)를 바탕으로 해당 학생을 위한 합리적 편의(예: 물리적 접근성, 관련 도구 및 서비스 제공)를 결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504 계획을 작성하고 시행해야 한다. 504 계획은 IEP에 비해 간단한 형식으로 학생의 장애로 인한 특성과 필요한 합리적 편의 내용을 중점으로 담고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재활법 504조 보호 대상 학생들은 ‘수정’ 을 적용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대부분 ‘조정’ 수준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504 계획은 ‘조정 계획(accommodation plan)’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504 계획을 통해서도 ‘수정’ 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는 매년 504 계획을 검토해야 하며 학부모나 교사는 504 계획이 학생의 필요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라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활법 504조는 IDEA와 달리 정확한 재평가 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504 위원회는 ‘주기적(periodic)’ 으로 학생의 편의 지원 및 서비스의 수혜 자격을 재평가해야 한다(deBettencourt, 2002).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차이는 있지만 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재활법 504조에 의해 학교가 준수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IDEA의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Brougher, 2010).

2) 합리적 편의의 선정, 활용 및 평가

IEP팀과 504 위원회는 ‘문제해결 과정(problem-solving process)’을 통해 각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합리적 편의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IEP와 504 계획 작성 시 각 학생의 장애로 인한 특성과 필요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편의를 선정해야 한다. 동일한 장애가 있다고 해도 같은 합리적 편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부적절한 편의는 학생의 성취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Beech, 2015).

효과적인 합리적 편의를 선정하고 이를 적용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IEP팀과 504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첫째, 수업 및 평가에서 학생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과제는 무엇인가? 우선 IEP팀과 504 위원회는 다양한 자료들(예: 이전 IEP/504계획, 형성/진단평가 결과, 교사 및 학부모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이 일반교육과정의 교육 및 평가 활동에 있어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를 파악해야 한다. 학생은 학업적(예: 읽기, 쓰기, 수학), 의사소통, 기능적/발달적(예: 안전, 자기돌봄, 소근육 활용), 사회 및 정서적 행동(예: 대인관계 기술, 스트레스 대처 능력) 기술 등 다양한 영역의 과제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IEP팀과 504 위원회는 학생이 어려움을 보이는 영역 및 구체적인 과제를 파악해야 한다(Table 3 참고).

<Table 3> Examples of Domains and Tasks Students Have Difficulties

Examples
Example 1 - Domain: Curriculum and Learning (Mathematics Problem Solving and Analyzing) - Task: Solve math word problems --Madison answers 75% of math word problems incorrectly. She has trouble determining which information is needed to solve the problem and often uses the wrong operation to calculate the answer.
Example 2 - Domain: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 (Attention and Task Persistence) - Task: Complete assignments and assessments in class — Marquez is easily distracted by extraneous noises. He has difficulty maintaining attention and effort and completes only 50% of his assignments.

* Examples are from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Accommodation Guideline.

둘째, 왜 이러한 과제가 학생에게 어려운가? IEP팀 및 504 위원회는 각각의 과제가 왜 학생에게 어려운지를 파악하여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장벽을 찾아야 한다. 먼저 팀은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과 기대되는 발달적, 행동적 기대 수준을 바탕으로 학생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어려워하는 영역이 쓰기라면 해당 학생 학년의 쓰기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달성해야 하는 주요 과제를 분석한다. 그 후 팀은 그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기술과 학생의 현재 수준을 비교하고 합리적 편의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달성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주장하는 글쓰기라면 학생의 이전 주장하는 글쓰기 과제를 분석해 학생의 현재 수준(예: 서론 결론 부분 작성, 쓰기 과제에 집중 잘함)과 어려움(예: 정보의 조직화, 연결어 사용, 주장의 구체적인 이유 쓰기)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어떤 합리적 편의가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IEP 팀 및 504 위원회는 학생의 과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의 능력과 필요에 잘 부합하는 가장 효과적인 합리적 편의를 선택해야 한다. 적용할 수 있는 여러 합리적 편의를 생각해보고 이후 범위를 좁혀 구체적인 편의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필요성(necessary: 학생의 장애로 인한 영향을 줄여주는가? 학생의 과제 수행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가?), 독립성 지원(supports independence: 합리적 편의의 사용이 학생이 과제를 더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가? 사용하기 쉬운가?), 일반화(generalizable: 학생이 다른 비슷한 과제 수행을 위해 혹은 다른 장소에서 합리적 편의를 사용할 수 있는가?), 수용 가능성(acceptable: 학생이 합리적 편의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학생이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합리적 편의 선정 과정에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학생의 합리적 편의에 대한 선호도 및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합리적 편의는 결국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장애학생은 자신의 장애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학교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옹호 전략(self-advocacy strategies)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많은 장애학생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졸업 후 고등교육기관, 직장 등에서도 이러한 합리적 편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졸업 후에는 자기 스스로 합리적 편의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합리적 편의는 IEP나 504 계획에 기재되어야 한다. 학교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IEP에는 대개 교수 및 평가를 위한 합리적 편의를 기재하는 영역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합리적 편의를 적용하는 장소, 적용 시작 일시, 사용 기간, 빈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Beech, 2015). 504 계획의 경우 학생이 필요로 하는 합리적 편의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어떻게,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제공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Bureau of Exceptional Education and Student Services, 2011).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합리적 편의의 효과를 평가할 것인가? 이다. 합리적 편의를 IEP나 504 계획에 작성한 후에는 팀은 합리적 편의를 실제 어떻

게 제공하며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 팀은 합리적 편의를 적용해야 할 상황 및 적용 시간, 학생이 합리적 편의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나 지원(예: 훈련, 도구), 합리적 편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예: 과제 달성 여부, 정확도, 속도, 독립성)과 방법(예: 형성평가 결과, 관찰을 통한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결정해야 한다.

실제 일반학급 수업에서 교사는 보편적 학습설계(Center for Applied Special Technology: CAST, 2011)나 차별화 교수(differentiated instruction; Tomlinson, 2014)를 활용하여 장애학생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합리적 편의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학생에게 합리적 편의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며 충분히 연습 기회가 주어졌는지 등도 파악해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학급의 교사가 합리적 편의의 목적과 필요를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이 사용해야 하는 합리적 편의의 목록을 제공받아도 그 목적과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사용되어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의 합리적 편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편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따라서 담당 학급의 교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합리적 편의를 적용한 후에는 그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한데 학생의 과제 달성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팀은 해당 합리적 편의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수정하거나 제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Reed, Brsowser & Korsten, 2002).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장애학생 대상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률과 제도 고찰을 통해 미국 교육 분야의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제의 내용과 범위, 합리적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의 합리적 편의 제공 정책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의 합리적 편의 지원 범위와 내용이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되고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결과, 교육 분야에서도 포괄적인 범위에서 합리적 편의가 제공되고 있었고, 공교육 체계뿐 아니라 사설 교육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합리적 편의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ADA에서는 재활법 504조가 적용되지 않아서 연방정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민간 운영 사립학교 및 기타 사설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에서의 장애학생 권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2008년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함으로써(국가인권위원회, 2007), 국내의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책무를 갖게 되었다(고은, 2012).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 대해서 인적·물적 지원, 교수·학습자료 지원,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그러나 국내 교육 분야에서의 합리적 편의 제공은 그 양상 및 수준에서 포괄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합리적 편의 제공 요구 시 교육 책임자의 수용 정도가 높지 않고, 편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확보 수준 또한 높지 않은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김기룡, 김삼섭, 2014).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중 ‘교육 분야 정당한 편의 내용’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의 내용을 요약한 것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분야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타당한 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분야에서의 합리적 편의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고 세부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홍정숙, 김선옥, 2022).

둘째, 국내 합리적 편의 지원의 대상 범위를 지적장애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유형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IDEA와 재활법 504조에서는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평가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 편의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정하고 IEP와 504 계획 작성을 통해 문서화하도록 하였다(Sulzberger, 2008; FAPE, 2001). 학습장애, 감각장애 학생들에게 응답 관련 조정(시험지에 답안을 작성 하면 시험 관리자가 답지에 옮겨 적기) 제공, 인지장애와 지체장애로 인해 텍스트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게 정보 전달 관련 조정인 시각적 단서 제공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게 제공하는 적절한 합리적 편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 ‘대응지침’에서는 합리적 배려의 예로 지적장애인 이용자 등에게 추상적인 언어가 아닌 구체적인 언어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발달장애, 언어장애 등으로 의사소통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의사소통보드, 정보의 문자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의 특별위원회 보고에서는 지적장애를 위해 알기 쉬운 지시나 교재·교구 제공, 자폐성장애에게 시각을 활용한 정보 제공 등 시각, 청각, 지적, 지체, 언어, 정서, 학습, 중복장애 등 장애유형별 합리적 배려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홍정숙, 김선옥, 2022).

그러나 국내에서는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수어 통역, 점자자료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규정 내용이 일부 장애 유형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중심으로 한정되어 제시된 문제점이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13)가 이루어

졌으나 여전히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진우(2008)는 시청각 보조자료 및 읽기 쉬운 버전 등 지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을, 홍정숙과 김선옥(2022)은 인지적 측면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내용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가이드라인 등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듯이 다양한 장애 유형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에 있어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교육계획 수립, 적절한 교수방법을 적용한 중재 실행과 함께 학생의 성취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 또한 중요하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평가방법의 제공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미국에서와 같이 평가 방법에 있어서의 조정과 수정 사항을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미국 재활법 504조에서는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학업 관련 필수 요구사항을 수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성적 평가 방법의 변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IDEA에서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다학문적 팀에 의한 종합적인 개별 평가 실시, 매년 IEP의 목표 달성 여부 검토 및 수정, 3년 주기의 재평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IDEA에서는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는 학생을 위해서 ‘수정’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20 U.S.C. § 1412(16)), 장애학생 학년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교육에의 참여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교는 교육적 활동과 평가에 필요한 적절한 조정과 수정을 통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다. 학생의 IEP와 504 계획에는 평가의 형식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시험 시간 연장, 시험 보는 장소 변경, 시험 문제 낭독 및 응답 대필 허용 등 학생이 시험을 보는 방식을 다양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의 필요와 주어진 학습과제의 목표에 따라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평가형식과 절차, 방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합리적 편의 지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하였으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률에 정당한 편의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 및 적용 관련 가이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지침서(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Oklahom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2011)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정당한 편의 제공과 관련한 학교 측의 역할 및 책임의 한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이현수, 2011), 정당한 편의 지원 관련 가이드를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에서도 합리적 편의 제공을 법률로 규정하여 의무적 이행을 강조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에게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 편의 선정, 활용 및 평가 관련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현실이다. 미국은 IDEA와 재활법 504조를 통해 IEP팀과 504 위원회가 학생의 장애로 인한 특성과 필요를 기초로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합리적 편의를 선정한다(Beech, 2015). 선정한 합리적 편의는 IEP와 504 계획에 합리적 편의 및 서비스 유형, 제공자, 제공 장소, 적용 시작 일시, 사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재한 내용대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합리적 편의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합리적 편의 선정 과정에 장애학생 당사자를 포함하여 학생의 선호도와 의견을 반영하려 하고 합리적 편의의 효과성까지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장애학생에게 더 나은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학생 중심의 합리적 편의 선정 및 제공, 합리적 편의의 효과성 평가와 같은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합리적 편의가 보다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지원 내용과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국내 정당한 편의 지원 내용과 기준을 보면 물리적 편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비물리적 편의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운, 2014). 이에 국내 비물리적 편의 지원 확대뿐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김기룡, 김삼섭, 2014). 정당한 편의 제공은 권리이면서 의무이며 개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김선옥, 2019). 선행 연구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에는 ‘반응적 의무(reactive duty)’와 ‘예측적 의무(anticipatory duty)’가 있다고 하였다. 반응적 의무는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특정한 편의를 필요로 할 때 편의 제공 책임자가 그에 부응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이고, 예측적 의무는 ‘편의 제공자가 특정한 개별 장애인이 아닌 일반적 장애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편의를 예측하여 그에 적절한 정당한 편의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하는 의무’라고 하였다(Monaghan, 2005; 홍정숙, 김선옥, 2022) 정당한 편의 지원의 내용과 기준 범위를 확장할 때 반응적 의무 뿐 아니라 예측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분야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규정의 범위를 넓히고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위에 제시한 사항들을 실천하려는 노력과 함께 특히 교육 분야에서의 합리적 편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 참여를 증진하고, 긍정적인 교육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교수자가 합리적 편의 제공의 유형과 활용에 대하여 무엇보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의 합리적 편의 지원 강화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자의 역할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수자의 합리적 편의 제공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법률, 학술논문, 정책보고서와 함께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지침서들을 분석하여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률의 주요 내용 및 범위,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나 교육 현장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어느 정도로, 어떤 방법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태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교육현장에서 합리적 편의 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DL (2018). A brief history of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Retrieved from <https://www.adl.org/education/resources/backgrounders/disability-rights-movement>
- Baek J. I. (2007). A study on the U.S. legal systems for protecting the rights to educ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ublic Law Journal*, 8(3), 539-559.
[백종인 (2007). 미국에서의 장애인교육권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공법학연구*, 8(3), 539-559.]
- Bartman, R. E. (1993). Student access: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Missouri Departmen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s://tinyurl.com/yc7zy4j8>
- Beech, M. (2015). Developing quality individual educational plans: A guide for instructional personnel and families, Fourth Edition. Tallahassee, FL: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fldoe.org/core/%20fileparse.php/7690/urlt/0070122-qualityieps.pdf>
- Billings, J. A., Pearson, J., Gill, D., & Rich, J. (1994). Meeting the needs of all students: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Washington Office of the Stat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 Olympia. Retrieved from <https://eric.ed.gov/?id=ED378771>
- Brougher, C. (2010).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Assistance. Retrieved from https://www.everycrsreport.com/files/20100929_RL34041_cbd7f22d9015562f4040ae1b11e766cc6256eb1e.pdf
- Bureau of Exceptional Education and Student Services. (2011). District implementation guide for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Tallahassee, FL: Division of Public Schools,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Retrieved from <http://www.fldoe.org/core/fileparse.php/7690/urlt/0070057-sect504.pdf>
- Burton, K., Dugas, A., Fasuamalie, E., Johnson, B. Kubinski, E., & Sim, G. (2011). Accommodations guid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 <https://dpi.wi.gov/sites/default/files/imce/sped/pdf/accom-guide.pdf>
- Center for Applied Special Technology. (2011). *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 guidelines: Version 2.0*. Wakefield, MA: Author.
- Cho, Y. (2009). Legal review on reasonable accommodation under the American with Disabilities

- Act, *Journal of Labour Law*, 32, 559-587,
 [조용만 (2009) 미국 ADA(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상의 합리적 편의제공에 관한 법리 연구. **노동법학**, 32, 559-587.]
- Choi. S. C. (2010). A study on the concep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Disability & Social Welfare*, 1(3), 65-91.
 [최승철 (2010). 정당한 편의 개념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연구**, 1(3), 65-91.]
- deBettencourt, L. U. (2002). Understanding the differences between IDEA and Section 504.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34(3), 16-23.
- FAPE(2001). School accommodations and modifications. Retrieved from <https://tinyurl.com/bdcc8x7p>
- Fleischer, D., & Zames, F. (2001).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From charity to confrontation*.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Florida Department of Education (2018). Accommodations: Assisting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from <https://www.fldoe.org/core/fileparse.php/7690/urlt/0070069-accomm-educator.pdf>
- Frey, B. B. (2018). *The SAGE encyclopedia of educational research, measurement, and evaluation*. SAGE.
- Henderson, K. (2001). Overview of ADA, IDEA, and Section 504.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Eric Clearinghouse on Disabilities and Gifted Education. Retrieved February, 08, 2022, from <http://ericec.org>.
- Howard, P. (2004). The least restrictive environment: How to tell? *Journal of Law & Education*, 33(2), 167-180.
- Hong, J. S., & An, S. K. (2018). Historical changes and policy implications in compulsory education, schooling deferment, and the exemption system for special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9(4), 293-322.
 [홍정숙, 안상권 (2018).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과 취학유예·면제 제도의 역사적 변천 및 정책적 시사점.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9(4), 293-322.]
- Hong, J. S., & Kim, S. O. (2022).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ies for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 in the education field between Korea and Japa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24(1), 131-164.
 [홍정숙, 김선옥 (2022). 일본의 교육분야 ‘합리적 배려’ 정책이 한국의 ‘정당한 편의’ 정책에 주는 시사. **지적장애연구** 24(1), 131-164.]
- Hong, S. H. (2021). Legal review on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Focusing on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and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32(1), 1-32.
 [홍석한 (2021). 미국의 장애인법(ADA)에 대한 고찰-장애의 개념과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32(1), 1-32.]
- Hussar, B., Zhang, J., Hein, S., Wang, K., Roberts, A., Cui, J., Smith, M., Bullock, M. F., Barmer, A., & Dilig, R. (2020). *The condition of education 2020* (NCES 2020-144).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nces.ed.gov/pubsearch/pubsinfo.asp?pubid=2020144>
- IRIS Center (n.d.). Understanding accommodations. Retrieved from <https://iris.peabody.vanderbilt.edu/micro-credential/micro-accommodations/p01/>

- Kang, Y., Lee, J. H., & Lee, S. Y. (2016). A survey on the educational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2, 1-31.
- [강영택, 이정현, 이성용 (2016). 학령기 장애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실태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1-31.]
- Kanter, A. S. (2019). Let's try again-Why the USA should ratif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ouro Law Review*, 35(1), 1-43.
- Kim, K. R., & Kim, S. S. (2014). Critical Review on Korean Anti-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ople Act in Respect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ocial Welfare Policy*, 35, 169-195.
- [김진우 (2008). 지적장애인 관점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정책**, 35, 169-195.]
- Kim, K. R., & Kim, S. S. (2014). Assessment in education of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apply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4(4), 143-172.
- [김기룡, 김삼섭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교육 분야에 대한 입법 평가. **유아특수교육연구**, 14(4), 143-172.]
- Kim, M. S. (2012). UN convention on disability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effect of treaty reservation and the incidental opinion the parliament, *Journal of Institution and Economics*, 8(1), 169-209.
- [김명수 (2012).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기본권 보장-조약의 유보와 부대의견의 효력을 중심으로. **제도와 경제**, 6(1), 169-209.]
- Kim, S. O. (2019). Kazuo Itoga "Education with love and empathy: The last lecture" the operation status and prospect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n Korean education field. *2019 Spring Conference data collection of the Korea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424-428.
- [김선옥 (2019). 이토가카즈오 「최후의 강의: 사랑과 공감의 교육」을 통해서 본 한국 교육현장에서의 「정당한 편의」 운영실태와 전망. **한국특수교육학회 2019년도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424-428.]
- Kim, Y. H. (1993). Guaranteeing the right to work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 121-142.
- [김영환 (1993).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 **직업재활연구**, 3, 121-142.]
- Ko, U. (2012). Shift to inclusive education according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ith priority given to the Germany teacher education system.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4(2), 1-26.
- [고은 (2012).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완전통합교육으로의 전환-독일의 교사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4(2), 1-26.]
- Lawson, A. (2008). *Disability and equality law in Britain: The role of reasonable adjustment*. Portland, OR.: Hart Publishing.
- Lee, B. I. (2007). A study on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in the United States: Major changes & consideration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7(2), 21-46.

- [이병인 (2007). 2004년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IDEA) 개정안 주요 내용 고찰. **유아특수교육 연구**, 7(2), 21-46.]
- Lee, H. S. (2011). Educational discrimination in the law of prevent discriminating the disabled and suggesting the future's task. *Crisisonomy*, 7(3), 127-138.
- [이현수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교육차별에 대한 고찰과 이행과제. **한국위기관리논 집**, 7(3), 127-138.]
- Lee, S. Y. (2006).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in EU and U.S. *Study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17(2), 363-397.
- [이소영 (2006). 유럽과 미국의 장애인 반차별법, **미국헌법연구**, 17(2), 363-397.]
- Lim, A. S. (2002). The legal comparison of IEP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3(4), 27-44.
- [임안수 (2002). 우리나라와 미국 IEP의 법적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3(4), 27-44.]
- Lipkin, P. H., & Okamoto, J. (2015).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for children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36(6), e1650-e1662.
- Monaghan, K. (2005). *Blackstone's guide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legisl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otwani, M. (2007). The ADA and IDEA basics: Inclus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change: The Early Childhood Leaders' Magazine Since 1978*, 17(4), 14-19.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7).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13). *A study on the criteria for providing reasonable accommodation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국가인권위원회 (201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Nebraska Department of Education (2011). Accommodations guidelines: How to select, administer, and evaluate accommodations for instruction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from <https://www.education.ne.gov/wp-content/uploads/2017/07/Accommodations-Guideline-Nov-2011.pdf>
- Oklahoma State Department of Education (2014). Oklahoma accommodations guide. Retrieved from <https://sde.ok.gov/accommodations>
- Oh, U. (2016). Analyzing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A comparative law study of OECD countr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2, 245-274.
- [오욱찬 (2016).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 분석-OECD 국가에 대한 비교법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2, 245-274.]
- Park J. U. (2014). Limitations and revision plans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Monthly Welfare Trends*, 188, 37-42.
- [박종운 (201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월간 복지동향**, 188, 37-42.]
- Reed, P., Bowser, G., & Korsten, J. (2002). How do you know it? How can you show it? Milton, WI:

- Wisconsin Assistive Technology Initiative. Retrieved from <http://dpi.wi.gov/sites/default/files/imce/sped/pdf/at-know-it-show-it.pdf>
- Shimizu, S. (2011).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education- Implications from Section 504 of the Rehabilitation Act-. *Bulletin of Human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24 · 25, 2-14.
- [清水貞夫 (2011) 教育における障害差別と合理的配慮—米国リハビリテーション法504条項からの示唆—. *人間発達研究所紀要*, 第24 · 25号, 2-14.
- Smith, T. E. C. (2001). Section 504, the ADA, and public schools: What educators need to know. *Remedial and Special Education*, 22(6), 335-343.
- Song, K. J. (2010). A study on the ADA amendment act in U.S. *Journal of Labour Law*, 36, 289-340.
- [송강직 (2010). 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노동법학*, 36, 289-340.]
- Sulzberger, L. A. (2008). Reasonable and effective accommodations consideration packet. Retrieved from <https://tinyurl.com/5atzmrrs>
- Tomlinson, C. A. (2014). *The differentiated classroom: Responding to the needs of all learners*, (2nd ed.). Alexandria,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 Turnbull, H. R., Turnbull, A.P., Stowe, M., & Wilcox, B.L.(2000).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The law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6th ed.). Denver, CO: Love.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6). Parent and educator resource guide to Section 504 in pub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Retrieved from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frontpage/faq/rr/policyguidance/index.html>
- Vaughn, J. (2003). *Disabled rights: American policy and the fight for equality*.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Wilkinson, W., & Dresden, C. (1997).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nd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nd their application to educational issues. In Mellard, D. (Eds.) *Symposium on accommodating adults with disabilities in adult education programs. NAASLN Conference 1996* (pp. 42-70).
- Wisconsin Department of Public Instruction(2011). Accommodations guid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Retrieved from <https://dpi.wi.gov/sites/default/files/imce/sped/pdf/accom-guide.pdf>
- Yell, M. L., Shriver, J. G., & Katsiyannis, A. (2006).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of 2004 & IDEA Regulations of 2006: Implications for Educators, Administrators, & Teacher Trainers. *Focus on Exceptional Children*, 39(1), 1-24.
- Yoo, D., Lee, M., Park, G. (2011). *A study on legitimate convenience under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Focusing on the case of EEOC in the United States-*. Busan: Ministry of Justice, Dongeui University.
- [유동철, 이미라, 박가은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에 대한 연구-미국 EEOC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 법무부, 동의대학교.]
- Yook, J., & Jun, K. I. (2004). Laws and funding resources related to special education technology in the United Stat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9(1), 169-187.
- [육주혜, 전경일 (2004). 미국의 특수교육공학관련 제도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1), 169-187.]

<국문 초록>

미국의 장애학생 대상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제 고찰

옥민옥 · 홍정숙 · 표윤희

[목적] 본 연구는 미국 교육 분야의 장애학생에 대한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률과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 분야의 합리적 편의 제공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 관련 법률, 정책문서, 학술자료 등의 검토를 통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 첫째,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주요 법률인 미국장애인법(ADA), 장애인교육법(IDEA), 재활법 504조를 검토하여 성격 및 목적, 보호 대상 범위, 장애학생 교육 및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관련 주요 원칙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였다. 둘째,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의 내용적 범위를 조정과 수정으로 나누어 범주와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였다. 셋째, 미국의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절차를 IEP 및 504 계획 수립 절차와 합리적 편의 선정, 활용 및 평가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다. **[결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의 합리적 편의 제공 정책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합리적 편의, 정당한 편의, 법, 정책, 미국, 장애학생

논문 접수(Received): 2022. 05. 18. / 심사 시작(Examined): 2022. 05. 18. / 게재 확정(Accepted): 2022. 06. 17.